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 12.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1. 12.

다. 상정·의결일자 : 2006. 1. 18.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1998년 1월부터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함.(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5-650(2005. 12. 20 ~ 2006. 1. 9)호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481(2005. 7. 29)호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 1606(2005. 10. 12)호
- 경상남도 회계과 - 18738(2005. 10. 13)호
- 경상남도 회계과 - 22395(2005. 12. 5)호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에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와 비용에 충당한다는 명분으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3년이후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전설업체에서는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임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수차례 개선권고를 받은 사안으로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군 재정의 어려움은 없는지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문 : 입찰참가 수수료가 1년에 얼마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까 ?
- 답 :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약 3억정도의 수수료가 징수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2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7백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6. 1.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